

NEWSLETTER 849

Jul 10, 20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 나프타 관련 할당관세 세율 인하, 조정관세 폐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시행일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과 하는 것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

관세율표	품명	규격	세율	한계수량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한다)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00,000,000 배럴

II.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5%에서 0%로 인하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나프타에 대한 0.5% 조정관세를 폐지하여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 나프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III. 시행일자

2023.07.0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문

[붙임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문

[붙임3]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6)

[붙임4]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3)

I Contact



양다운 관세사

T 02-6011-3051
E dyyang@esein.co.kr



유호성 관세사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